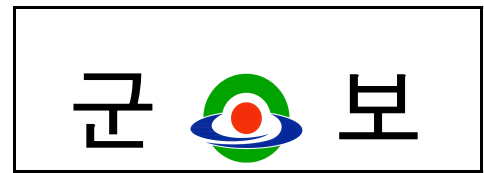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07호 2019. 11. 28.(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2호)
- 예천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83호)
-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8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2호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나.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조 ~ 제4조)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발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실장)
 - 위 원 -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가능
-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3호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발전을 위한 군민화합”을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으로, “예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예천군민의 날”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민의 날”을 “예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새군민상”을 “군민상”으로, “각종문화예술등”을 “각종 문화예술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군수가 따로 시행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예천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행사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일에 관한 사항 추가 (제3조제2항)
 -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군민의 날(매년 10월 16일) 외에도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84호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행사협찬 및 장학기금 접수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

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심 의 요 구 서(제10조제2항 관련)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 실장·과장·소장 (서명)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의견서(제10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목적	
신청인	주소		기탁금품액	
	성명		기탁관서	
	생년월일		기탁방법	

1. 신청 개요

- 가. 기탁 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 다. 기탁 사유
- 라. 사용 목적(용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 의견(관련 부서)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제13조 관련)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 일시 :
2. 심의 방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심의 장소 :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4. 심의 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예 천 군 수 귀 하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전 번호 :

2. 심의 안전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탁일 :

마. 기탁 관서 :

3. 심의결과

가. 의결 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이유 :

◇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3조)

-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부자 명부관리·예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제4조 ~ 제9조)

- 기부금품 기탁자 기부증서 발급
- 기부자 각종행사 초청 및 표창장·감사패 수여, 문화·체육·복지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5명 이내
-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규정

다. 심의요구, 위원회의 회의, 결과 통보 (제10조 ~ 제13조)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 및 회의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